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24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 건 2005구합31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감사원장  
변 론 종 결 2005. 8. 31.  
판 결 선 고 2005. 9. 7.

### 주 문

- 피고가 200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는 2001. 9. 21.부터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이하 헬기도입사업



이라 한다)을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다.

나. 피고는 국방부의 위 헬기도입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의 위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위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4. 9.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①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② 감사결과 요구사항, ③ 감사결과보고서 개요, ④ 감사결과보고서 목차, ⑤ 감사결과보고서 중 경제적 타당성 검토 관련 부분, ⑥ 감사결과보고서 표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7.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헬기도입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일체(감사결과보고서, 목차, 감사실시 개요 포함)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4.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11. 18. 헬기도입사업에 관한 감사결과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법 제13조 제4항 위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단지 군사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만 하였을 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저히 해하는지, 어떤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비공개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실질적 비밀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부 실질적 비밀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여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생산된 자료는 군사기밀지정권자인 국방부장관 등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제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
- (2) 피고는 2004. 3. 25.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의결을 거친 후 2004. 3. 29.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하여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다.



(3)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①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다목적 헬기의 작전요구성능, ② 한국형 다목적 헬기의 개발사업비와 관련된 것, ③ 헬기도입사업의 전제가 되는 우리나라 헬기의 성능, 기술수준 및 각국의 헬기에 대한 비교 검토, ④ 헬기도입사업의 계획 및 추진 경위와 관련된 것, ⑤ 헬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된 것, ⑥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관련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는 정보공개법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법률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지정권자로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고, 이와 같은 군사기밀의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별도의 공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우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보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정보공개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군사기밀보호법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정보공개법 제14조 제4항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당해 정보가 어떠한 법의 또는 기본권과 충



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충돌되는 법의과 함께 비공개 사유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군사기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위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상의 '부대의 장'은 '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접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 다음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군사 2급 비밀인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취급하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국방부장관의 공개 여부 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통지해 주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흡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24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중곤 \_\_\_\_\_

판사 안병욱 \_\_\_\_\_

판사 김명섭 \_\_\_\_\_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장관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자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 (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9조 (공개요청)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의 공개"라 함은 군사기밀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언론·집회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군사기밀의 등급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I 급비밀: 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II 급비밀: 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III 급비밀: 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I 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I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국방부장관

3.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관급장교

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II급 및 군사 III급 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 I급비밀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II급 및 III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를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방법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를 것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그 기밀에 대한 접근의 방지 또는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 제7조 (공개)

①국방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 (공개요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24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제2항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II급비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 국가정보원법

- 제3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 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안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 ① I급비밀 및 암호 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1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 ② II급 및 III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I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24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제69조 (위임규정) ①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군,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미리 안전기획부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 운용에 필요한 세칙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감사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책임 및 임무)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원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총무과장은 감사원보안담당관으로서 원장을 보좌하여 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2급비밀 및 3급비밀 취급인가)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 및 3급비밀 취급인가권자가 특히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5급 이상 직원
2. 각 국, 실장이 지정하는 각 국, 실의 비밀취급자 및 동 보조자
6.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끝.